

## 부속서 I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 분야 건설서비스

####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971호, 2008. 3. 21.)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3호, 2008. 12. 31.) 제13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제2  
조 및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9553호, 2009. 3. 25.) 제14조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9198호, 2008. 12. 26.)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81호, 2008. 12. 18.) 제2조의  
별표 1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08. 12. 18.) 제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8980호, 2008. 3. 21.) 제21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63 호, 2009. 1. 14.)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5호, 2007. 4. 7.)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 3.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동차관리법(법률 제 9109 호, 2008. 6. 13.) 제 20 조, 제 44 조, 제 45 조 및 제 5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6호, 2009. 4. 8.)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 4. 분야 제조 및 유통 서비스

하위분야	담배 및 주류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담배사업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48 호 2008. 12. 3.) 제 4 조 및 제 5 조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600 호, 2008. 1. 14.)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7 조 주세법(법률 제 8837 호, 2008. 1. 9.)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40 조 및 제 4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95 호, 2009. 2. 4.) 제 9 조, 제 45 조, 제 51 조 및 제 56 조 국세청 고시 제2005-5호 및 제2006-24호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담배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주류 도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농축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5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1호, 2009. 3. 4.)  
부록 1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재배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으며,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 6.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2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9호, 2009. 1. 16.) 제1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와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와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7.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약사법(법률 제 9123 호, 2008. 6. 13.) 제 42 조 및 제 45 조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 20679 호, 2008. 2. 29.) 제 6 조 및 제 7 조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142 호, 2008. 11. 28.) 제 4 조 및 제 13 조 의료기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4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84 호, 2008. 12. 31.) 제 19 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41 호, 2008. 9. 22.) 제 6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88 호, 2009. 1. 13.) 제 2 조 및 제 5 조 식품위생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8 조, 제 21 조 및 제 22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71 호, 2009. 3. 25.)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02 호, 2009. 4. 3.) 제 16 조 및 제 20 조 별표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4호, 2008. 3. 28.) 제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 나. 의료기기, 또는
-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 나. 식품공급 서비스
-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8.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하위분야

9. 분야

##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 관련의무
- 내국민대우(제 10.2 조)
- 시장접근(제 10.4 조)
- 현지주재(제 10.5조)

조 치 해운법(법률 제 9615 호, 2009. 4. 1.) 제 24 조 및 제 3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10 호, 2009. 3. 26.) 제 17 조,  
제 19 조, 제 29 조 및 제 30 조  
도선법(법률 제 9443 호, 2009. 2. 6.) 제 6 조  
선박투자회사법(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3조 및 제31조

## 유보내용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와 해운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 10.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3 조, 제 6 조,  
제 112 조, 제 113 조, 제 114 조 및 제 132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9. 2. 10.) 제278조, 제  
278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나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 가. 외국 국민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 라.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고위경영진의  
2 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인은 당해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에게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

## 11.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기 사용 사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3 조, 제 6 조 및  
제 134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9. 2. 10.) 제298조 및  
제299조의2

유보내용 투자

항공기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 가. 외국 국민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고위경영진의  
2 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12. 분야      쿠리어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139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9. 2. 10.) 제3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13. 분야      통신서비스

###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9702 호, 2009. 5. 21.)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6 조, 제 19 조 및 제 59 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5385 호, 1997. 8. 28.) 부칙 제 4 조 전파법(법률 제 9482 호, 2009. 3. 13.) 제 13 조 및 제 20 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9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9 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 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 9702 호, 2009. 5. 21)
  -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 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9702 호, 2009. 5. 21)
  -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해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9481호, 2009. 3. 1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라 함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4.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 9127 호, 2008. 6. 13.) 제 9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59 호, 2008. 12. 9.) 제 13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50 호, 2008. 9. 12.) 제 4 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55 호, 2008. 3. 28.) 제 27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89 호, 2008. 12. 24.) 제 65 조, 제 66 조 및 제 68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81호, 2008. 12. 26.) 제25조 및 제2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5. 분야      소매·리스·임대 그리고 수리 서비스

하위분야      의료기기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의료기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5 조 및 제 16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4. 18.) 제22조  
및 제2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  
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6. 분야 대여서비스

하위분야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 9070 호, 2008. 3. 28.) 제 29 조

및 제 30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02호, 2009. 2. 24.) 제5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17. 분야 과학조사 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양과학조사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4986호, 1995. 12. 6.) 제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 18.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변호사법(법률 제 9416 호, 2009. 2. 26.) 제 4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34 조, 제 45 조, 제 58 조의 6, 제 58 조의 22 및  
제 109 조  
법무사법(법률 제 8920 호, 2008. 3. 21.) 제 2 조, 제 3 조 및  
제 14 조  
공증인법(법률 제 9416 호, 2009. 2. 6.) 제 10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  
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19.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노무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노무사법(법률 제 9255 호, 2008. 12. 26.) 제 5 조,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대한민국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변리사법(법률 제 7870 호, 2006. 3. 3.)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6 조의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변리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21.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회계사법(법률 제 8863 호, 2008. 2. 29.)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8호, 2009. 2. 3.)  
제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2.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세무사법(법률 제 9348 호, 2009. 1. 30.)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및 제 20 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02 호, 2009. 2. 4.) 제 97 조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3.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관세사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3조, 제7조 및 제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해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해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4.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9319 호, 2008. 12. 31.) 제 15 조 및 제 52 조의 4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63 호, 2009. 1. 14.) 제 15 조의 3 및 제 19 조의 3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65호, 2007. 1. 12.) 제18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25.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건축사법(법률 제 9187 호, 2008. 12. 26.) 제 2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22 조 및 제 23 조</p> <p>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4 호, 2008. 3. 14.) 제 13 조</p> <p>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 9502 호, 2009. 3. 18.) 제 4 조</p> <p>기술사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6 조</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8967 호, 2008. 3. 21.) 제 9 조</p> <p>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020 호, 2008. 9. 18.) 제 11 조</p> <p>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 9056 호, 2008. 3. 28.) 제 25 조 및 제 28 조</p> <p>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402 호, 2009. 3. 31.) 제 49 조 및 제 54 조</p> <p>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13 호, 2009. 4. 6.) 제 28 조</p> <p>환경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 9037 호, 2008. 3. 28.) 제 35 조</p> <p>축량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39 조</p> <p>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025 호, 2008. 9. 22.)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18 조</p> <p>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57 호, 2008. 3. 21.) 제 16 조</p> <p>온천법(법률 제 9202 호, 2008. 12. 26.) 제 7 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 9198 호, 2008. 12. 26.) 제 4 조</p>

## **유보내용**

###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6.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방송법(법률 제 9280 호, 2008. 12. 31.) 제 13 조 및 제 73 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 8974 호, 2008. 3. 21.) 제 11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911 호, 2008. 7. 9.) 제 31 조 및 제 41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 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  
하여야 한다.

27.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직업안정법(법률 제 9040 호, 2008. 3. 28.) 제 19 조 및 제 3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506 호, 2007. 12. 31.)  
제 21 조 및 제 33 조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 316 호, 2009. 3. 10.)  
제 17 조 및 제 36 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64 호, 2008. 3. 2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0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094 호, 2007. 6. 18.) 제 3 조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 318 호, 2009. 3. 10.)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9216 호,  
2008. 12. 26.) 제 17 조  
선원법(법률 제 8381 호, 2007. 4. 11.) 제 100 조, 제 101 조,  
제 103 조, 제 104 조, 제 106 조, 제 107 조, 제 122 조의 2 및  
제 122 조의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 제 6457 호, 2001. 3. 28.) 제 5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09년 4월 17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해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항만청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28. 분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경비업법(법률 제 7671 호, 2005. 8. 4.) 제 3 조 및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312 호, 2004. 3. 17.) 제 3 조 및  
제 4 조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5호, 2006. 9. 7.) 제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 가. 시설경비
- 나. 호송경비
- 다. 신변보호
- 라. 기계경비, 그리고
- 마. 특수경비

29.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2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676 호, 2008. 2. 29.) 제 7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제7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가.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또는
- 나. 소설 · 만화 · 사진집 · 화보집 및 잡지

국내간행물 배포자는 배포 후에 필요시 사후 심의를 받는다.

30.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 9313 호, 2008. 12. 31.) 제 137 조 및 제 138 조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98호, 2007. 2. 10.) 제16조, 제  
304조 및 제30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  
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31.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고등교육법(법률 제 9356 호, 2009. 1. 30.) 제 3 조, 제 4 조, 제 21 조, 제 32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65 호, 2009. 1. 16.) 제 13 조 및 제 28 조 사립학교법(법률 제 8888 호, 2008. 3. 14.) 제 3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21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74 호, 2009. 1. 28.) 제 9 조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 21337 호, 2009. 2. 27.) 제 1 조 및 제 2 조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10219 호, 2010. 3. 3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2075 호, 2010. 3. 15.) 제 3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2 분의 1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2 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 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Ⅱ에 기술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사내대학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설립, 증설, 또는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공인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획득한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할 수 있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 32.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 (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 8483 호, 2007. 5. 25.) 제 2 조, 제 2 조의 2 및 제 13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740 호, 2008. 2. 29.) 제 12 조 평생교육법(법률 제 9641 호, 2009. 5. 8.) 제 30 조, 제 33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및 제 38 조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 10219 호, 2010. 3. 3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2075 호, 2010. 3. 15.) 제 3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호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10339 호, 2010. 6. 4.) 제 4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83 호, 2010. 3. 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평생 및 직업 교육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제공이나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의

###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그리고

2) 지식 및 인력 개발 관련 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라 함은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의 설립, 증설, 그리고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33.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법률 제 9316 호, 2008. 12. 31.) 제 28 조,  
제 32 조 및 제 3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98 호, 2009. 3. 31.) 제 24 조  
및 제 26 조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20호, 2009. 4. 1.) 제12조  
및 제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  
소를 설치해야 한다.

34. 분야 수의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의사법(법률 제 10310 호, 2010. 11. 26.) 제 17 조  
기르는 어업육성법(법률 제9627호, 2010. 4. 23.) 제2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수의 서비스 또는 수산질병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35.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62 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7820 호, 2005. 12. 30.) 제 17 조 및 제 18 조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23 조의 7 지하수법(법률 제 7924 호, 2006. 3. 24.) 제 29 조의 2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40 조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 7573 호, 2005. 5. 31.) 제 8 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 7849 호, 2006. 2. 21.) 제 20 조 폐기물관리법(법률 제 7459 호, 2005. 3. 31.) 제 26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471호, 2004. 7. 13.) 제 6 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하위분야란에 기재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36. 분야      공연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6 조 및 제 7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4 조 및  
제 6 조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 18 호, 2008. 11. 14.)  
제 4 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 661호, 2009. 4. 3.) 별표 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7.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214 호, 2008. 12. 26.)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5, 제 16 조 및 제 2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836 호, 2008. 6. 20.) 제 4 조 및  
제 10 조  
전파법(법률 제 9482 호, 2009. 3. 13.) 제 20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대한민국 내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38.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9.7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약사법(법률 제 9123 호, 2008. 6. 13.) 제 42 조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 2008. 12. 1.) 제21조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민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39.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은 제외한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8 호, 2008. 6. 5.) 제 20 조 및 제 29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148호, 2008.12.6.)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및 제 20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100 분의 50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부터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 할 수 있다.

40.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양곡관리법(법률 제 9662 호, 2009. 5. 1.) 제 12 조  
축산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30 조 및 제 34 조  
종자산업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42 조  
사료관리법(법률 제 8931 호, 2009. 3. 22.) 제 6 조  
인삼산업법(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20 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5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81 호, 2009. 3. 4.), 부록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 호, 2008.  
2. 29.)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43 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  
식품부고시 제 2008-153호, 2008. 12. 31.) 제 14 조 및 제 20 조의 2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0.2조 및 제10.4조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1.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이행요건(제 9.7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9.6 조) 시장접근(제 10.4 조) 현지주재(제 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방송법(법률 제 9280 호, 2008. 12. 31.)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3 조부터 제 18 조까지, 제 48 조, 그리고 제 69 조부터 제 71 조까지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36 호, 2008. 12. 31.) 제 57 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9280호, 2008. 12. 31.) 제11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전송

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해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해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3 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방송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해야 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각 채널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상  
    100 분의 80 이하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각 채널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100 분의  
    70 이하, 그리고
-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각 채널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40 이하
-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30 이상 100 분의 50 이하
-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 분의 60 까지 1 개 국가의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 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보도 · 오락 · 드라마 · 영화 · 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 42. 분야      에너지산업

하위분야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sup>1)</sup>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4.) 제 168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91 호, 2009. 2. 4.) 제 187 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및  
제 5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214 호, 2008. 12. 31.) 제 5 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81 호, 2009. 3. 4.) 부록 1

기획재정부 고시(제 2000-17 호, 2000. 9. 28.)

금융투자업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09-17 호, 2009. 2. 4.) 제 6-2 편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해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대한민국 영역내 전체 발전설비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속서 II에 기재된 대한민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호는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43. 분야      에너지 산업

하위분야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sup>2)</sup>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50 호, 2006. 10. 4.) 제 19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7 호, 2009. 2. 4.) 제 168 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9071 호, 2008. 3. 28.) 제 4 조 및 제 5 조  
한국가스공사정관 (2007. 3. 26.) 제11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2) 부속서 II에 기재된 대한민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호는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4.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9.7 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96 호, 2008. 6. 5.) 제 2 조, 제 27 조 및 제 40 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64 호, 2009. 3. 25.) 제 19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